

# 컴퓨터關聯發明의 審查基準

84年 11月 1日 審議거쳐 最終決定

特 許 廳

## 머 립 말

이 作業은 日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關係되는 發明에 關한 審查基準” “마이크로 컴퓨터 應用技術에 關한 發明에 對한 審查運用指針”과 美國의 “MFEP”를 參考하여 84. 8. 24. 草案作成을 完了하였고 審查基準 檢討委員會를 構成하여 數次에 걸친 檢討를 거친후에 84. 11. 1자로 工業所有權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最終決定하였다.  
이 基準은 아직 未治한 點이 많아 앞으로 더욱 發展시켜 나가야 할 素地가 많다고 생각되지만 審查에 多少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優先 制定施行키로 한 것이다.

## 컴퓨터關聯發明의 審查基準

### 1. 目 的

컴퓨터關聯發明의 出願이 全 技術分野로 擴散되어 增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出願을 審查함에 있어서 審查의 均衡을 기하고 審查一般基準 適用時 統一을 기하기 위해 本 基準을 制定한다.

### 2. 適用範圍

이 審查基準은 컴퓨터關聯發明(혹은 考索)의 審查에 대하여 適用한다.

### 3. 一般審查 基準과의 關係

이 基準에서 特別히 規定하지 않은 事項은 一  
32

般審查基準에 따른다.

### 4. 用語의 定義

#### 가. 컴퓨터

컴퓨터의 基本構成(入・出力部, 中央處理部, 記憶部)을 가지고 情報處理 機能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컴퓨터關聯發明

컴퓨터應用技術에 關聯된 發明으로서 프로그램의 手順에 技術思想이 있는 方法發明, 컴퓨터가 機器와 結合되어 特定機能 實現手段으로 應用될 때의 應用機器에 관한 裝置發明등 發明의 構成要素에 컴퓨터가 關聯되어 있는一切의 發明을 말한다.

#### 다. 소프트웨어

컴퓨터作動과 關聯된 것으로서 프로그램, 플로우차트, 프로그램 說明書등을 말하며, 컴퓨터가 빙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容易하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資料들도 포함한다.

#### 라. 프로그램

“컴퓨터에 所望하는 작업수행을 지시하기 위한 命令들의 集合”을 말하며 프로그램 리스트는 이것을 프린트등으로 出力한 것을 말한다.

#### 마. 手 順

順序에 의미가 있는 一聯의 處理 또는 操作을 뜻한다.

### 5. 判斷對象이 되는 發明의 把握

判斷對象이 되는 發明은 出願書에 첨부된 明

細書의 “發明의 詳細한 說明” 및 “圖面”을 參考하여 “特許請求의 範圍”의 기재에 의거하여 把握한다.

## 6. 成立性 判斷

가.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의 일부만을 보고 成立性 判斷을 할 것이 아니라 手段의 全體結合 즉, ク래임 全體를 判斷對象으로 해야 한다.

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特定의 問題解決을 위해 利用하는 手順의 法則性이 自然法則에 의거한 것일 때에는 方法發明으로 成立될 수 있다.

다. 數式이나 數學的 알고리즘 自體를 權利로請求하고 있으면 發明으로 成立할 수 없다.

라. 컴퓨터가 어떤 裝置나 시스템내에서 特定의 技術的 目的을 達成하는 機能實現手段으로利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機能實現手段에 의해構成되는 發明은 裝置發明으로 成立할 수 있다.

### 〔說明〕

(가) 컴퓨터의 基本的인 機能은 數值의 記憶, 演算, 比較등 人間의 精神活動과 유사한 것이다.

發明의 成立性 判斷에 있어서 이와같은 컴퓨터의 具體的이고 細部의인 基本機能만 보고,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의一部로서 컴퓨터가 利用되는 發明인 경우 成立을 否定한다거나 또는 프로그램은 不成立하는 發明으로 取扱한다든지 또는 請求範圍을 新規部分과 公知部分으로 分離해서 新規部分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發明으로 不成立한다고 하는등의 判斷方法은 適切한 判斷方法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컴퓨터關聯方法은 構成要素의 結合全體를 判斷對象으로 하여 自然法則 利用與否를 判斷하는 것으로 한다.

(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예컨대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技術的 思想은 그 프로그램의 手順으로부터 把握될 수 있는 것이며, 그 프로그램이 問題解決을 위해 利用하는 手順의 法則性이 自然法則인 경우에는 自然法則을 利用한 方法發明으로 認定하는 것으로 한다.

(다) 請求範圍에서 數式이나 數學的 알고리즘 自體를 權利로請求하고 있으면 成立될 수 없다. 왜냐하면 數式이란 數學的 公式이거나 自然法則 自體를 表現한 것이므로 自然法則을 利用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어떠한 機械裝置나 시스템에서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의一部로 컴퓨터를 利用하는 경우 컴퓨터 자체는 프로그램에 의해 動作이 되는 것 이지만, 컴퓨터가 수행하는 각 機能들에 대한 實際의인 機能實現手段이 存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機能實現手段에 의해構成되는 發明은 裝置發明으로 成立하는 것으로 한다.

## 7. 特許請求의 範圍의 記載

컴퓨터와 關聯된 裝置發明에 있어서는 機能實現手段을 方法發明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實現되는 手順을 明瞭하게 記載하여야 한다.

### 가. 共通事項

特許請求의 範圍에 기재된 機能實現手段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實行되는 手順은 發明의 目的 및 作用効果에 對應하는 것이어야 한다.

例를 들면,

1) 上記 機能實現手段 또는 手順 대신, 發明의 目的 또는 作用効果에相當하는 것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2) 裝置發明에 있어서, 상기 機能實現手段 대신에 컴퓨터의 動作 또는 프로그램의 實質的 内容에相當하는 手順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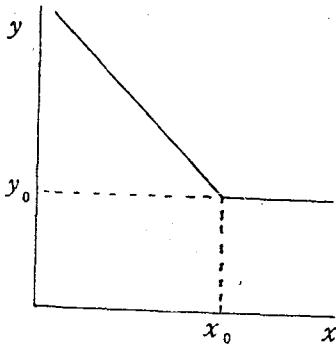
### 나. 裝置發明인 경우

發明에 필요한 所定의 多數의 機能實現手段과 그 이외의 컴퓨터 應用機器를 구성하는 것과의結合關係를 명백하게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 경우

1) 所定의 機能實現手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機能을 達成하는 方法을 나타내는 一連의 記載에 의해 표현할 수가 있다. 다만, 方法을 나타내는 一連의 記載는 프로그램의 實質的內容에相當하는 手順이어서는 안된다.

### 〔說明〕

예를 들면,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所定의 한 機能이 오른쪽 그림의 함수로 표시되는 경우는 그 機能을 適切하게 表現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 $入力 x$ 가  $x_0$ 이하일 때의 出力  $y$ 를  $-x+k$ 로 하고,  $入力 x$ 가  $x_0$ 이상일 때 出力  $y$ 를  $y_0$ 로 한다)와 같이 機能을 達成하는 方法을 나타내는 一連의 記載에 의해 表現되는 것을 認定한다.



2) 機能實現手段 및 컴퓨터 應用機器를 構成하는 것에 덧붙여 記憶內容의 特定된 記憶手段을 記載하는 것은 그것이 結合關係를 갖는 것이明白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記憶內容이 프로그램의 實質的內容에相當하는 手順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註〕

컴퓨터는 發明을構成하는 機能實現手段을 提供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컴퓨터를 特許請求의範圍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發明에 必要한 所定機能이 컴퓨터를 使用하여 實現되고 있음을 明示하기 위하여 그러한 機能을 컴퓨터 등으로 一括하여 記載할 때에는 그러한 機能이 適切하게 記載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方法說明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의해 實行되는 手順과 컴퓨터應用機器를構成하는 것에 의해 實行되는 手順을 順次의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註〕

應用機器의 動作에 關係되는 發明이 컴퓨터應用機器를構成하는 하드웨어의 特징을前提로하고 있는 경우는 方法의 表現形式은 不適當함.

### 8. 發明의 開示

#### 가. 發明의 明示

컴퓨터의 應用技術에 관한 發明에 있어서는 적어도 特許請求의範圍에 기재되어 있는 機能實現手段이 詳細하게 표시된 機能블럭도, 또는 手順이 詳細하게 표시된 플로우챠트(이것들을 클래임 對應圖라 한다)를 사용하여 發明의構成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說明〕

컴퓨터 應用機術에 관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각각의 관점에서의 설명만으로서는 發明의構成이 불명료하다.

그리므로 發明의 必須의構成要件을 明確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클래임對應圖를 使用하여 發明의構成을 설명하여야 한다.

#### 나. 實施例의 記載

컴퓨터 應用技術에 관한 發明의構成의 일부가 機能實現手段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實行되는 手順인 경우는 實施例로서 컴퓨터應用機器의 구체적構成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兩面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1) 하드웨어의 記載

應用機器를構成하는 것과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어떻게 關聯되어 있는가를 開示하여야 함.

##### 2) 소프트웨어의 記載

소프트웨어는 플로우챠트를 使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原則적으로 프로그램일람표를 使用하여 설명하여서는 안된다. 플로우챠트의 詳細한 정도는 적어도 發明의 特징이 되는 각機能 또는 각順序가 어떻게 實現되며, 또는 實行되는가를 開示하는 정도라야만 된다.

#### 〔註〕

프로그램일람표는 參考資料로서도 提出할 수 있다.

#### 〔說明〕

소프트웨어를 文章만으로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프로그램일람표에 의한 설명은 그量이 龙大해지고 또한 여러가지 프로그램言語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判讀하고 이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한편 소프트웨어는 플로우챠트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이해도 용이하므로 開示의 形태로서는 플로우챠트에 의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다.

### 9. 同一性, 進歩性

#### 가. 先行技術(他의 發明)과의 對比判斷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할 事項

##### (1) 裝置發明의 경우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機能에着眼하여 對比判斷을 한다. 예를 들면,

1)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復數의 機能이 컴퓨터 등으로 一關하여 기재되고 있는 경우에도 각機能이 個別的인 手段에 의해 實現되고 있는 것이라고 看做하여 機能에 着眼하여 對比判斷을 한다.

2) 어떤 機能이 각각의 個別的인 하아드웨어에 의해 實現되고 있는 경우에도 實現手段에 의해 수행되는 效果가 通常의으로 豫測되는 效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면, 그 實現手段의 差異에 구애받지 않고 機能에 着眼하여 對比判斷을 한다.

#### (2) 方法發明인 경우

어떤 手順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實行되는 것인 경우, 가령 컴퓨터의 하아드웨어나 컴퓨터의動作에 關聯된 사항이 포함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手順에着眼하여 對比判斷을 한다.

### 나. 同一性, 進歩性의 判斷에 있어 參考가 되는 事項

#### (1) 同一性의 判斷

同一性의 判斷에 있어서는 다음의 1), 2)를 參照한다. 先行技術(他의 發明)과의 對比判斷을 한結果

1) 必要한 機能 또는 手順에 있어 相違하지 않으면 同一한 것으로 본다.

#### [說明]

예를 들면, 回路등에 의해 實現되고 있는 機能을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機能으로 轉換시킨 發明에서 그 轉換에 의하여 發明의 目的 및 效果에 각별한 差異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同一한 것으로 본다.

2) 必要한 機能 또는 手順에 관한 相違點이 컴퓨터에 관계되는 通常의 技術思想을 단지 附加 또는 削除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同一한 것으로 본다.

#### [說明]

예를 들면, 機能에 관한 相違點이 컴퓨터에 관한 通常의 技術事項을 附加 또는 削除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그 附加 또는 削除에 의하여 發明의 目的 및 效果에 별다른 差異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同一한 것으로 본다.

#### (2) 進歩性의 判斷

進歩性의 判斷은 機能의 相違에 着眼하여 行하므로 従來의 判斷方法과 같다. 또 컴퓨터 應用技術에 관한 裝置發明중 進歩性이 없다고 判斷되는 類型의 例로서 다음의 것을 들 수가 있다.

1) 용이하게 實施할 수 있는 컴퓨터에 관계되는 公知의 技術事項의 集合

#### [說明]

예를 들면, 컴퓨터에 관계되는 公知의 技術事項을 集合시킨 發明으로서 그集合에 곤란성이 없고 또한 그集合에 의해 수행되는 效果도 通常의으로 豫測되는 效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는 進歩性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용이하게 實施할 수 있는 컴퓨터에 관계되는 公知의 技術事項의 附加 또는 削除

#### [說明]

예를 들면, 先行技術에 대하여 컴퓨터에 관계되는 公知의 技術事項을 附加 또는 削除한 發明에 있어서 그 附加 또는 削除에 곤란성이 없고, 또한 그 附加 또는 削除에 따라 수행되는 效果를 벗어나지 않으면 進歩性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용이하게 實施할 수 있는 컴퓨터 관계 公知技術事項을 特定된 應用機器에 적용했을 때

#### [說明]

예를 들면, 컴퓨터에 관계되는 公知된 技術事項의 適用對象을 限定 또는 變更에 곤란성이 없고, 또한 그 限定 또는 變更에 의해 수행되는 效果도 通常의으로 豫測되는 效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進歩性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人間이 수행하고 있던 역할을 단지 컴퓨터에 의해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自動化

#### [說明]

예를 들면, 先行技術에서 人間이 수행하고 있던 역할을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機能으로 代置한 發明에서 그 代置에 곤란성이 없고 또한 그 代置에 의해 수행되는 效果도 通常의으로 豫測되는 效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進歩性이 없는 것으로 본다. 今后

외국상표선호사상

상표도용조장한다